

예 산 총 칙

201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01,962,080	12,058,862
일반회계	358,507,457	10,755,224
특별회계	43,454,623	1,303,639
공기업특별회계	23,553,859	706,61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139,938	514,19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413,921	192,418
기타특별회계	19,900,764	597,023
주택사업특별회계	209,680	6,290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393,690	11,81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625,000	48,750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866,002	25,980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58,978	19,76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661,236	19,837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9,025,039	270,751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422,700	72,68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326,795	69,804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078,974	32,369
기반시설특별회계	616,070	18,48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6,600	498

제 2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4,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089,592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일반운영비
3. 여비
4. 자산및물품취득비